

발전노동자

민주노조 사수
전력산업공공성 강화
애고자 원직복직
임금체계개악 쟁취
생존권 사수

제203호

발행인 : 신연규
발행일 : 2015.07.10
☎ 070-4048-5991
FAX 070-7500-8158

미지급 통상임금, 전직원 지급 결정을 환영한다

어제 한국남동발전(주) 이사회에서 전직원에게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발전노조는 이번 결정을 매우 환영하며, 남부노조도 더 이상 지급을 미루지 말것과 나머지 3개 발전회사도 조속히 전직원 지급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우리는 추가소송과 관련하여 대표소송 인정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지난날 발전노조가 대표소송을 통한 전체직원에게의 적용을 요구했을 때,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후 발전노조가 소송에 들어가고, 기업별노조 조합원들이 동요하자, 기업별노조들과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제 발전노조의 소송 결과를 전체 직원에게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당시의 합의서는 발전노조의 소송을 대표소송으로 인정하는 합의서였던 셈이다.

2013년 1월 이후분부터의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발전노조가 추가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회사노조도 이를 따르고 있다. 발전노조의 소송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통상임금 소송에는 노사 모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회사노조들까지 소송에 합세하면 소송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이것은 고스란히 회사의 부담이 될 것이다. 시간외수당 강제삭감 등으로 경비절감에 혈안이 된 회사가 왜 눈에 뵈는 비용 부담을 회피하지 않는가? 이미 발전노조 소송을 대표소송으로 인정한 한차례 사례가 있는데 무엇을 망설인단 말인가? 회사가 대표소송을 인정해준다면 발전노조는 각사별 조합원 1인씩 대표소송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

발전노조의 소송이 있었기에 회사가 합의서에 서명했고, 발전노조가 승소했기에 전직원이 통상임금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회사노조의 일부 몰염치한 조합간부들은 여전히 발전노조 조합원들을 폄하하고 있으며, 현장에 괴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소송 참가자들은 성공보수 6%를 내야 되는데, 소송 미참가자들은 비용부담이 없다며 자랑질한다. 이것은 마치 광복 이후에 “당연히 해방될텐데 독립운동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고 가산을 탕진하며 싸운 독립운동가들은 어리석다.” 고 말하는 친일파들의 태도와 같다.

둘째, 발전노조의 4차 소송 참가자들에게는 통상임금을 지급되지 않는다는 괴담을 흘리고 한다. 합의서 작성 당시 소송 미참가자였던 4차 소송자들은 당연히 합의서 적용대상이다. 합의서에는 ‘작성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 외 어떠한 조건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 발전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부당노동행위이다. 발전노조는 지난 7월 7일 회사에 4차 소송과 관련한 계획을 통보하고 미지급 통상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후면 첨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KOREAN POWER PLANT INDUSTRY UNION (KPIU)

우 135-878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9-6 대동빌딩 3층 <http://www.baljeon.nodong.net> FAX 070-7500-8158
사무처장 조준성 ☎ 070-4048-5991 baljeon@baljeon.nodong.net

문서번호 발전노조 1507-077호 2015. 07. 07

수 신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사장

참 조 경영관리처장, 경영지원처장

제 목 추가소송 계획 알림 및 미지급 통상임금 지급요청

1.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를 기원합니다.

2. 2015.6.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전노조 통상임금 청구소송 선고가 있었고, 소송 미참가조합원들이 추가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가소송은 현재 소장만 접수된 상태이며, 청구기간 및 청구금액은 아직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3. 귀사가 기업별노조와의 합의서대로 통상임금을 전직원에게 지급 준비중에 있기에, 우리 노동조합의 추가소송은 해당 기간 이후의 통상임금만을 청구금액으로 산정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또한 귀사가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순간, 추가소송자들의 청구권은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재판에서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소송 제기 여부에 상관없이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신 현 규

